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

재출년월일 : 1996. . .
재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대통령령 제14744호('95. 8. 4.)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현행제도의 기능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이내 → 120인이내로 개정
2.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 건설교통국장 으로 개정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대상금액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를 →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

□ 근거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설계등의심의 대상공사)

□ 기타참고자료 (붙임)

현행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문)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80인이내"를 "12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호중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동조 제2호중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를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 (국가기관을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로 한다.

동조 제3호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를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